

항목: **학생**

발행: 3/24/10

번호: **A-415**

주제: 교육청 응급상황 통보 시스템

페이지: 2 중 1

개요

이것은 신규 규정입니다. 뉴욕시 교육청에서는 주법에 의거하여 학부모와 교직원, 선출된 공직자들이 문자 메시지나 전화, 이메일 등을 통해 응급상황을 통보해 주는 시스템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.

I. 서문

- A. 교육청은 뉴욕시 학교 건물 내 학생이나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만한 응급상황이나 사건 발생 시 학부모, 교직원 및 선출된 공직자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
- B. 각 학교는 저마다 평상시 정상적인 학교운영 및 비상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프로토콜과 절차를 수립한 안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또한 각 학교에는 학교 안전위원회를 두어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현안이 되는 안전문제를 논의하며 안전절차 및 예방, 정보 전략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뉴욕시 교육청에서는 주법에 의거하여 학교 관련 응급상황에 관한 가장 최신 정보를 학부모들에게 전달할 또 다른 수단으로, 학부모와 교직원, 선출된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응급상황 통보망을 구축하여 문자 메시지, 전화, 이메일 등을 통해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C. 본 시스템에 가입하는 학부모, 교직원, 선출된 공직자들은 학교 건물 내에 있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즉각적인 위해가 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상황 발생 시 통보를 받게 됩니다.
 - 1. 학교 건물 소개령 및 학생 대피
 - 2. 정규 하교시간이 지나서도 학생들을 학교 건물 내에 남아 있도록 하는 조치로 인한 하교 지연
 - 3. 응급 사태에 따른 휴교
 - 4. 등교시간 지연

II. 가입

- A. 학부모, 교직원 및 선출된 공직자들은 웹사이트 www.nyc.gov/notifynyc나 전화 311로 연락하여 Notify NYC에 가입하여 비상시 이메일로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B. 인터넷을 통해 본 시스템에 가입하는 학부모, 교직원 및 선출된 공직자들은 비상상황을 통보받고자 하는 최대 다섯 군데 지역의 우편번호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. 학부모의 경우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있는 지역의 우편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. 이메일을 통해 본 시스템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이메일, 문자메시지, 전화 중에 자신이 통보를 받고 싶은 연락 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C. 그러나 311로 전화하여 가입하는 경우 전화로만 응급상황을 통보받을 수 있으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통보는 불가능합니다.
- D. 시스템 가입 해지를 원하는 사람은 <https://a858-nycnotify.nyc.gov/NotifyNYC/FAQ.aspx>에 나온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.

항목: 학생

발행: 3/24/10

번호: **A-415**

주제: 교육청 응급상황 통보 시스템

페이지: 2 중 1

III. 공고

각 학교장은 반드시 학부모 코디네이터나 기타 책임자를 임명하여 본 응급상황 연락 시스템 가입 절차를 잘 알고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.

IV. 문의

본 규정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십시오:

전화:
718-610-0266

Director of Emergency Management
N.Y.C. Department of Education
44-36 Vernon Boulevard – Room 600
Long Island City, New York 11101
Alisa@schools.nyc.gov

팩스:
718-610-0261